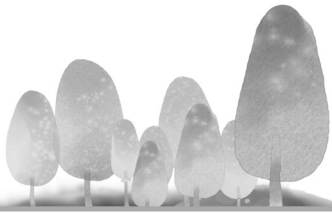


#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 분석 및 인권기본조례 제정 방안 연구

—  
연구자 | 오 동 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며 ..... 1
- II. 인권기본조례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
  - 1. 지역사회와 인권 ..... 1
  - 2. 인권기본조례의 의의 ..... 2
  - 3.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성격 ..... 6
- III.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 ..... 8
  - 1. 분석의 틀 ..... 8
  - 2.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의 분석 ..... 11
  - 3.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한 평가 ..... 20
- IV.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방향과 전략 ..... 22
  - 1.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위상 ..... 22
  - 2.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방식 ..... 24
  - 3. 인권기본조례의 구성 체계 ..... 27
- V. 나오며 ..... 32
- 〈부 록〉 ..... 33
  - I.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 ..... 33
  - II.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38
- 〈참고문헌〉 ..... 46



## I. 들어가며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행정의 주체에게도 주어진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사인(私人)에게도 이러한 의무는 있다. 특히 기업, 사립학교, 언론매체, 정당 등에서 인권보장 의무는 강하게 요청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한 면이 있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연구는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 II. 인권기본조례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 지역사회와 인권

지역사회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부분사회이다.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는 오랜 기간의 공통 경험을 통해 일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공유하고 어느 정도 동질적인 관습과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것을 지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라 부를 수 있다. 즉 “정주 단위를 기초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 또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대부분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지리적 조직단위”이다.<sup>1)</sup>

1) 김구, “지역공동체 재창조를 위한 지역정보화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탐색,”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지역정보학회, 2010, 7;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 2012, 69 재인용.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지역공동체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해체되었다. 최근 마을공동체 살리기 운동은 이러한 지역공동체를 복원·발전시키려는 시도이다. 다만 이러한 지역공동체 개념은 인권과의 관계를 따지는 법적 주체 개념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법적 주체는 국가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한 법인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이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단체조차 지역공동체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의 수도 지역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법적으로만 국가로부터 독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연합으로서 재구조화될 때 지방자치에 부합하면서도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공동체에서 인권 관계의 정립은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배제와 차별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공간에서 국가 차원과 다른 인권관계의 형성, 결과적으로 인권 확장 및 심화 그리고 증진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인권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제구실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화 장치가 인권기본조례이다.

## 2. 인권기본조례의 의의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접근 방법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실행방향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행력이 확보되는 조례”로 정의할 수 있다.<sup>2)</sup> 간략하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로 이해할 수 있다.

2)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3.

그것이 기본적인 것은 여러 인권을 망라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그에 대한 과정을 인권 관점에서 평가·감독할 수 있는 기본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기본조례는 일본에서는 꽤 오래 전부터 발전하였다.<sup>3)</sup> 그 출발점은 ‘부락 문제’ 또는 ‘동화문제’로서 부락 출신자에 대한 신분적 차별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법률적 대처가 미진하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일본 지자체의 인권조례 제정 상황을 보면,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15개 부현에 16개의 인권조례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까지 계산하면 전체 1804개 시정촌 가운데 410개 시정촌에, 410개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sup>4)</sup>

한국에서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87년 헌법 개정 이후 ‘선거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인권 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인권의 제도화가 모색되었다. 1990년대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다양하게 제정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표적인 인권보장기구이다.

둘째, 그렇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권의 법제화는 성공적이지 못한 영역이 있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의 경우 학생인권은 추상적인 조문화에 그쳤다.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이른바 ‘학생인권법안’으로 부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내용은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야간의 추가수업 및 자습, 두발 및 복장 검사,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 검사,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2007년 12월 14일 초·중등교육법

3)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81-82.

4)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81-82.

제18조의4로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그쳤다. 그에 따라 광주, 경남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도되었으며, 경기도를 비롯하여 광주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되었다.

셋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진보적’ 지방단체장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의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후퇴하고,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인권적 관점을 상실해가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를 통하여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꺾혀졌다.

넷째, 인권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그 배경으로 삼을 수도 있다. 국제레짐은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영역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립되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인 일련의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 절차”이다.<sup>5)</sup>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국제레짐을 국내법으로 전화하는 데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의 확장은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인권기본조례이다.<sup>6)</sup>

그리하여 지금은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표 1〉).

5) 조정근, “국제체제이론과 국제레짐이론: 지적 배경과 이론전개의 비교,” 부산정치학회보 제7권 제2호, 부산정치학회, 1997, 375; 정천구, “국제인권레짐과 북한인권문제,” 통일전략 제5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5, 264;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 2012, 16 재인용.

6) 그 이론적 전개과정에 대하여는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 2012, 79 아래 참조.



&lt;표 1&gt;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 지자체     | 조례명                     | 최근 제개정일    |
|---------|-------------------------|------------|
| 경남      | 경상남도 인권 증진조례            | 2010.03.25 |
| 전북      |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2010.07.09 |
| 부산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 2010.11.22 |
| 부산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 2010.12.15 |
| 부산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 2011.05.06 |
| 울산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1.11.08 |
| 광주      |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1.01 |
| 부산      |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2.22 |
| 울산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3.05 |
| 부산 북구   |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 2012.03.12 |
| 충남      |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5.10 |
| 서울 성북구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 2012.06.29 |
| 경남 고성군  |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7.02 |
| 전남      |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7.05 |
| 광주 남구   | 광주광역시 남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 2012.08.10 |
| 경북 문경시  |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09.27 |
| 서울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2012.09.28 |
| 경남 진주시  |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0.04 |
| 울산      |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0.11 |
| 대전      | 대전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 2012.11.02 |
| 부산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 2012.11.09 |

7) 자치법규정부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인권 & 증진”으로 검색하여 산출하고 일부 보완함. 검색일: 2013.2.2.



| 지자체    | 조례명                       | 최근 제개정일    |
|--------|---------------------------|------------|
| 대구 달서구 |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2.03 |
| 전남 목포시 | 목포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2.17 |
| 강원 원주시 |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2.21 |
| 전남 완도군 | 완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2.27 |
| 광주 서구  |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2.12.31 |
| 울산 남구  | 울산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3.01.02 |
| 충남 부여  |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2013.01.09 |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은 점차 증가할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자칫 형식적인 조례에 그쳐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전통적인 법리를 동원하여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쟁점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성격

인권기본조례는 인권의 이념보다는 법률과의 관계에서의 조례의 위상 때문에 중앙정부가 제정한 법령의 한계 안에 갇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 법률의 위임이 없이 독자적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법권을 인정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를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지방자치의 존재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인권기본조례는 헌법이 요청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헌법 제10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인권기본조례가 규정하는 인권 증진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인지의 문제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헌법 제117조 제1항)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인권이야말로 주민의 복리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 더욱이 인권기본조례는 인권 증진에 목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헌법이 요청하는 방향성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국가의 입법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수요를 예측하여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권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 사항을 자치사무로부터 배제할 까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점들은 전통적인 법리에 따르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조례의 법령적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역적 특색이나 실험성 또는 선도성을 띠지 못하고 법령을 되풀이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협소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른 한편 인권을 법제화하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법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인권은 크고, 또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sup>8)</sup> 인권 증진의 방향에서 인권기본조례의 헌법적 정당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과거의 구태의연한 관행을 깨고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9)</sup>

8) 같은 의견으로는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19.

9) 조례 제정을 통한 인권 증진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 533). 일면 타당한 면이 있지만,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그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 Ⅲ.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

수원시의 경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인권 관련 개별 조례가 존재한다. 그 현황이 어떠한지 분석·평가하였다.

#### 1. 분석의 틀

인권 관련 조례는 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에서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sup>10)</sup> 그 입법화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둘째, 포괄적인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의 개별 부문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의 인권선언을 공포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인권 개념의 확산과 공동체 차원의 약속이다.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일본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관심사와 특성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사회 인권상황의 종합적인 평가와 발전계획 등 지역사회 자체를 기준으로 구성된 전체의 인권증진과 개선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포괄적인 인권 기본조례는 지역사회 전체를 인권친화적 구조와 인권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 다만 세 번째 유형에 비하여 여전히 다소 선언적인 면이 강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거시적인 인권보장과 인권증진 원칙을 수립하고 그 지향점을 정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한

10) 조소영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에서 부산시의 인권 조례를 분석하였다(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2009, 1-26). 아래의 입법화 유형은 그의 글에 힘입었다.

골격을 구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11)</sup>

세 번째 유형은 특정한 쟁점을 다룸으로써 관련된 구체적인 집단이나 사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례는 특정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집단, 예를 들어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사람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거나 보행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쟁점을 그 내용으로 한다.

수원시의 경우 2012년 12월 기준으로 317개의 조례, 125개의 규칙이 있다.<sup>12)</sup> 세 번째 유형의 조례만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의 것으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가 있다.<sup>13)</sup> 그러나 그 내용은 ‘시민도덕(의무)강령’에 가깝다. 자연환경 보호 및 복지 도시 건설, 효의 정신과 전통문화 발전, 검소하고 성실하며 예의 있는 생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결국 세 번째 유형의 것만 남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관련 조례가 있다. 여기에 수원시의 정책목표로서의 내용을 담은 교통과 환경 그리고 건강·안전·문화 도시 관련 조례가 있다. <표 1>은 수원시조례 중 인권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례를 최대한 모은 것이다. 이들 조례는 전체적으로 인권지향 관점이라기보다는 ‘도시목표’<sup>14)</sup>로서 정책 관점의 성격이 강하다. 즉 ‘인권 → 정책’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정책 → 인권(관련성)’의 방향이다. 이때 인권도 정책의 반사적 이익 또는 그 부수적 효과의 의미가 강하다.

11) 김중섭, “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현상과 인식 2007 겨울호, 2007, 39.  
 12) 차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일: 2012.12.24.  
 13) 제정 1964.11.16 조례 제0289호, 일부개정 1971.02.09 조례 제457호, 일부개정 2009.06.15 조례 제2838호.  
 14) 헌법에서 예산 등 현실적 조건 때문에 기본권의 형식으로 규범화하기 적절치 않아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규정한 것을 국가목표조항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유추한 개념으로서의 도시목표는 도시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표 2>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 목록

| 대분류            | 분야          | 조례명                           | 비고 |
|----------------|-------------|-------------------------------|----|
| ‘사회적 약자’<br>조례 | 여성          |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    |
|                |             |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
|                |             |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
|                |             |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
|                | 장애인         |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
|                |             | 수원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 폐지 |
|                | 노인          |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
|                |             |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
|                |             |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    |
|                |             |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
|                | 이주민         |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
|                |             |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
|                |             |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
| 도시<br>목표<br>조례 | 환경          |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    |
|                |             |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    |
|                |             |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
|                | 교통          |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             |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    |
|                |             |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
|                | 건강·안전<br>문화 |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
|                |             |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    |
|                |             |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    |

## 2.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의 분석

### 가. 여성 인권 관련 조례

먼저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다. 이것은 2012. 10. 4. 기존의 <수원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sup>15)</sup>를 대체하여 조례 제3153호로 제정한 것이다. 일단 조례 명칭이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바뀐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법률이 <여성발전기본법>인 것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조례가 주로 여성에 대한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성 소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차별 금지 조항조차 없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아쉬운 점이다.

조례의 구성은 ‘시정목표’로서 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조항 외에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성평등위원회, 수원시 여성발전기금, 수원시 여성상, 여성 관련 시설 및 여성단체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2012. 2. 6. 조례 제3103호로 제정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동 조례 제2조 제2호). 여성에 친화적인 도시 건설을 모토로 하여 도시 시설 및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과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세 번째로 2012. 10. 4. 조례 제3142호로 제정된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여성기업’은 “수원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

15) (제정) 2004.07.28 조례 제2502호, (전문개정) 2008.01.10 조례 제2745호, (일부 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폐지) 2012.10.04 조례 제3153호 수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동 조례 제2조 제1호).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겠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여성 인력의 채용 확장을 도모하거나 또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그 파급효과로서 노동인권의 증진에 기여하는 의미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 조례를 여성 인권 관련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였는지 모르지만, 인권적 관점에서는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네 번째로 <수원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다.<sup>16)</sup> 이 조례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보다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 내용은 아동·여성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이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그 핵심은 계획의 수립과 관련 기구의 구성에 관한 내용 뿐이다. 더욱이 폭력 피해자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그 처우나 보호 등에서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아동을 여성과 함께 규율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sup>17)</sup>가 있다. 보호시설의 명칭은 "수원시 여성의 쉼터"(동 조례 제2조 제1항)인 것을 보면, 이 조례 또한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근거조항을 마련한 외에는 다양한 폭력 피해자에 관한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의 필요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여성 인권 관련 조례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법적 체계성을 갖추어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 (제정) 2009.08.07 조례 제2870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17) (제정) 1998.05.29 조례 제2137호.



### 나.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로 대표적인 것은 2011. 9. 27. 조례 제3060호로 제정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있다. 그러나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이 조례의 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일정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원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sup>18)</sup>가 있었으나, 이 조례는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19)</sup>로 통합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수원시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장애인·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동 조례 제2조 제1호). 장애인 관련해서는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수원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 시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있기는 하지만, 법률이 위임하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원시 차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보호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 조례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18) (제정) 1999.06.08 조례 제2194호, (폐지) 2006.06.30 조례 제2637호 수원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19) (제정) 2006.06.30 조례 제2637호, (일부개정) 2008.07.14 조례 제2765호, (일부개정) 2009.02.16 조례 제2827호, (일부개정) 2010.01.08 조례 제2899호.

#### 다. 노인 인권 관련 조례

먼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sup>20)</sup>가 있다. 그 내용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것이며(동 조례 제1조),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동 조례 제2조).

다음으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sup>21)</sup>가 있다. 내용은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생상품 우선 구매, 예산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로는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sup>22)</sup>가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여가복지 시설로 신고된 경로당”(동 조례 제2조)에 대하여 경비의 지원(동 조례 제3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동 조례 제5조),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 프로그램 개발”(동 조례 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익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용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사회봉사활동, 노인 일자리 등의 알선과 개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동 조례 제7조)는 법적 구속력 없는 조항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sup>23)</sup>가 있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의 효 문

20) (제정) 2009.08.07 조례 제2867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1) (제정) 2009.04.09 조례 제2833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2) (제정) 2009.06.19 조례 제2851호.

23) (제정) 2009.08.07 조례 제2868호.

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동 조례 제1조) 것이다.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동 조례 제4조). 다만,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한정함으로써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 등이 제외됨으로써 노인 인권에 관한 조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라. ‘이주민’ 인권 관련 조례

‘이주민’은 거주 생활 목적으로 수원에 정착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다양한 유형이 있다. 흔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떠올린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로는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sup>24)</sup>가 있다. 이때 다문화가족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 즉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이다(동 조례 제2조 제1호). “결혼이민자 등”은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다(동 조례 제2조 제2호). 그 내용은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이다.

다음으로는 이주민으로 지칭되지는 않지만,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sup>25)</sup>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 수원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외국인에 관한 조례가 있다. 2006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

24) (제정) 2009.08.07 조례 제2869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5) (제정) 2012.10.04 조례 제3146호.

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대우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sup>26)</sup>는 “입국 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로서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동 조례 제2조 제2호).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동 조례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제 지원 범위는 “1.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다(동 조례 제6조). 그밖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위탁, 세계인의 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마. 환경 인권 관련 조례

환경 인권 관련 조례는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sup>27)</sup>가 있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조례 제1조).

그 내용은 기본이념,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 언론 및 단체의 역할, 학교의 역할, 환경백서,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정보의

26) (제정) 2007.06.27 조례 제2690호, (일부개정) 2007.12.27 조례 제2729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7) (제정) 1997.10.27 조례 제2108호.

공개, 시민참여 등,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이다.

조례는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시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 법령과의 관계에서 여의치 않을 것이다. 환경 조례의 경우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재 우리의 법체계상 강화된 환경기준을 사업체에 요청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sup>28)</sup>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수원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 조례 제1조) 제정한 조례이다. 그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민·학교·시민단체·공공기관 등의 책무,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조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등, 재정지원 등, 기후변화 기금 기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sup>29)</sup>가 있다. “이 조례는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조례 제1조). 그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시·사업자·주민의 책무,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절차, 수원시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28) (제정) 2009.04.09 조례 제2834호, (일부개정) 2010.03.25 조례 제2911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0.12.29 조례 제2984호 수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1.08.05 조례 제3049호.

29) (제정) 2010.12.29 조례 제2984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3110호 수원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등이다.

#### 바. 교통 인권 관련 조례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sup>30)</sup>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조례 제1조). 그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sup>31)</sup>는 “수원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수원시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조례 제1조). 그 내용은 보행환경기본계획, 교통수단의 개선, 혼잡지구 관리, 조성기준의 설정,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등이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sup>32)</sup>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

30) (제정) 2009.01.08 조례 제2820호, (일부개정) 2009.10.01 조례 제2883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31) (제정) 2001.03.26 조례 제2302호, (일부개정) 2007.06.27 조례 제2679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2748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32) (제정) 2007.04.19 조례 제2678호, (일부개정) 2008.11.24 조례 제2806호, (일부개정) 2009.06.19 조례 제2854호, (일부개정) 2010.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조례 제1조). 그 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개선기준의 설정, 민간단체 등 지원, 시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자전거의 보험,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이다.

#### 사. 건강·안전·문화 도시 관련 조례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sup>33)</sup>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sup>34)</sup>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sup>35)</sup>는 ‘여성친화도시’처럼 수원시가 지향하는 도시 이념을 보여주는 조례이다. 그밖에도 수원시는 환경도시 등을 지향한다. 그런데 사실 건강·안전·문화·환경 등은 지방자치단체이든 도시이든 지역사회이든 또한 국가이든 기본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이념이며, 이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는 기본원칙, 건강도시 기본계획, 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는 “안전도시” 개념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33) (제정) 2011.11.10 조례 제3067호

34) (제정) 2007.01.03 조례 제2664호,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2748호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8.02.22 조례 제2750호, (일부개정) 2010. 12.22 조례 제2952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1.05.04 조례 제3020호, (일부개정) 2011.06.15 조례 제3027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35) (제정) 2011.08.05 조례 제3045호.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기본원칙, 사업의 범위,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안전도시협의회 구성,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는 문화도시를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동 조례 제3조 본문). 문화도시의 구체적 내용은 “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 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 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 5. 함께하고 배려하는 시민문화의 정착” 등이다(동 조례 제3조 각 호). 조례의 내용은 문화예술의 육성 등,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문화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문화도시수원포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밖에 〈수원시 도시개발 조례〉<sup>36)</sup>가 있다. 도시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 또는 가치 중의 하나가 주거생활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개발에서 중요한 인권은 거주자의 주거권이며, 설령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조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주민의견 반영 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3.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한 평가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 각각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개별적인 평가를 하였다. 총괄적으로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 관점에서 체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 수 조례는 2012년 또는 2011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다수이다. 그렇

36) (제정) 2009.01.08 조례 제2822호, (일부개정) 2011.12.27 조례 제3075호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 조례가 눈에 띄지 않는다.

셋째, 인권 관련 내용을 정한 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계획 및 관련 기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통상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인권 보장을 구체화하거나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일 텐데, 그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읽을 수 없었다.

넷째, 대부분 조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고 있다. “~ 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 많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에 그치고 있다.

다섯째, 그에 따라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의 정책 집행의 근거로서 그 권한과 노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인권 관련 조례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시 또는 시장의 ‘권력’ 확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권의 법제화가 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체계 또는 예산의 제한 때문에 그 제도적 보장의 범위가 행정에 의해 정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권력의 민주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비록 인권의 법제화가 더딜지는 몰라도 주민과 지방정부의 권력관계를 바꿔나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관련 조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개별적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없다는 점은 문제이다. 물론 대부분 아동·청소년이 학생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학생인권 문제로서 교육청의 관할이다. 그렇지만 ‘탈학교 아동·청소년’이 적지 않은 요즘 이들에 대한 인권 조례가 없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크다.

## IV.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방향과 전략

### 1. 인권기본조례의 법적 위상

수원시가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환경도시, 건강도시, 문화도시, 안전도시 등은 그 용례를 따른다면 ‘인권도시’로 총괄할 수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인권도시를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로 정의한다.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인권기본조례는 한편으로 지역적 합의와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조례로 인한 한계를 넘어 서야 한다. 즉 인권도시의 표방이 인권의 범주를 지역화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지역적 의미 자체를 축소시키는 고루한 사고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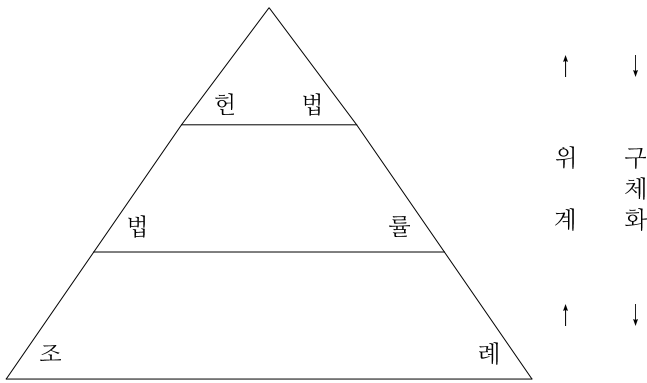
지방정부에서 인권도시의 지향은 국가 차원의 인권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또는 그것의 잔여물로서의 인권이 아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인권지향성이 중앙정부의 법률에 갇혀서도 안된다. 법률 위에 인권이 존재하며, 어떤 의미에서 인권은 헌법보다도 우위에 있다. 인권 전반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나 가능하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인권도시는 지금 이 도시에서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인권을 확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도시는 국가보다 더 높은 인권 보장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 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에서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식민지’이다. ‘3할 자치’ 또는 ‘2할 자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인권의 확산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해방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권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지방정부의 혁신은 인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투쟁’과 함께 하여야 한다. ‘투쟁’은 갈등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법률 개정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법규범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규범간 일정한 위계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에 따라 ‘헌법 - 법률(시행령) - 조례’의 서열관계가 존재하며 (<그림 1>), 하위의 법규범은 상위의 법규범에 저촉될 수 없다. 만약 하위의 법규범이 상위의 법규범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그 하위 법규범은 무효로 선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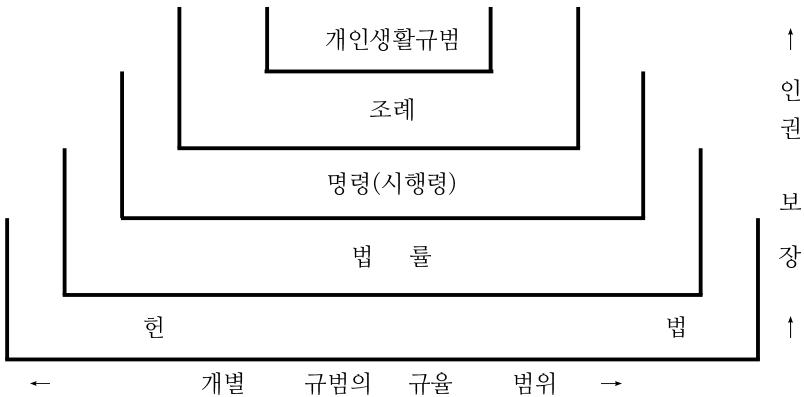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그러나 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 방향을 향하여 열린 개방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권력의 역진이다.

따라서 인권 보장의 기준점은 법규범 위계의 역순이다(<그림 2>). 모든 하위 법규범은 최고법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해야 하므로 법률(시행령)로써 조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한도 내에서 효력이 제한된다.

<그림 2> 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 2.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방식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방식은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sup>37)</sup> 첫째, 지자체 최초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 경우 ‘인권조례연구모임’안을 의회의 검토(연구모임에 의원참여)를 거쳐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된 형식으로 성립하였다. 둘째, 전라북도의 경우 ‘인권조례 추진 전북본부’의 안을 광역 지자체 집행부가 검토한 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형식으로 도의

37) 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 546. 또한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32-34 참조.

원이 발의하여 성립하였다. 셋째, 울산시 북구의 경우 시민청원운동(광역시 조례)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이 발의하였다.<sup>38)</sup>

조례 제정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의 발의, 주민발의(시민발의), 청원방식 등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의 위임조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위임조례들로 시민사회 내의 공론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속하게 제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발의에 의한 조례제정은 전체의원의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 혹은 지방의회 내의 관련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역시민사회의 입법운동이 의원발의를 추동해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 직권조례 입법의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sup>39)</sup>

인권기본조례는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그 원동력을 주민에 근거를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서의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인권 조례는 인권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 자체 의미도 있지만, 주민과 공권력간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단체장 또는 의회 의원의 ‘선거용 장식품’이 되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먼저 인권적 관점에서 현재의 정책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시는 환경도시 선언,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서 어떠한 인권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 정책 상호간의 관계는 적절하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진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시스템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38) 울산광역시의 인권기본조례 제정 움직임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의 시도는 시민사회와 공감대 부족, 상위법 부재를 이유로 한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33.

39) 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 546 아래.

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때문에 그 폭은 매우 좁다.

또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는 있지만, 모든 정책을 조례에 담아 낼 수는 없다. 조례는 지방정부가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에 그것이 지향해야 할 인권적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을 인권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이다. 지방정부 내의 조직 및 업무 관계와 공무원의 직무행위 속에서 어떻게 인권이 구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지역인권단체 등과의 다양한 의사소통 관계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정책들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연결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다. 각 정책의 자율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인권의 관점에서 총괄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고위공무원들이 인권적 관점에서 얼마나 업무수행의 협동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권 조례의 입법화는 아래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어야 한다.

첫째, 조례의 조문으로 성안되지 않지만, 어떠한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는지가 민관 협동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가능한 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고, 불가피하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내용은 규칙에 담는다.

둘째, 조례는 필수적으로 인권 관련 계획의 수립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규정할 텐데, 현실 진단을 통해 확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향후 장기·중기·단기 계획을 합의한다.

셋째,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구청과 주민자치센터 등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각 단위 간 협동과 연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또는 수원교육

지원 또는 대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에서의 생겨난 모든 정보는 최대한 주민에게 증계하거나 공개하며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 또한 최대한 공개한다.

조례 입법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체의 성공보다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인권적 관점을 체화하는 것이다. 즉 실행과 실천을 통한 배움과 그것의 나눔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시 공무원, 각종 단체 구성원, 지역주민 등 모두의 협동 작업이다.

### 3. 인권기본조례의 구성 체계

인권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해소할 수는 없다. 불가피하게 다양한 개별적인 구체적 영역의 조례가 요청된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모든 시 정책의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인권 관점의 평가를 가능케 하고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또한 가능한 기본적인 인권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사실 기본조례 체제는 개별적인 조례들만으로는 다양한 연계성이 강조되는 인권 영역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약점은 기본 조례가 대강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의 구체성과 추진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또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개별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이 추가적으로 요청된다.<sup>40)</sup> 충분한 숙고할 여력이 없거나 광범위한 관련 법제의 손질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다른 도시의 인권기본조례는 대개 다음과 같은 구성체계를 가지고 있

40) 이민법제와 아동청소년인권법제 등 다른 법 영역에서 이러한 ‘법전 체제’에 대한 구상은 각각 오동석, 이민법제의 헌법적 평가와 재구조화, IOM이민정책연구원, 2011; 오동석 외 3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및 아동청소년 인권법 입법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2012 참고.

다.<sup>41)</sup> 첫째, 인권의 목록이다.<sup>42)</sup> 인권도시조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 개념을 준용한다. 즉 동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권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인권의 주체로서 ‘주민’의 개념의 확장하는 문제가 있다. 주민등록법은 제6조 제1항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확장하여 “거주 목적의 체류자 및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결혼이주민 및 이주노동자 또한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인권기본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셋째,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책무를 지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은 인권기본조례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조례에 인권 관련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지자체의 장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인권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구를 두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넷째,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소

41) 이에 대한 상세한 비교 설명은 조상균 외 1인,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 34 아래 참조.

42) 학생인권의 경우 학교에서 어떠한 인권이 문제인지를 공감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권리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속 공무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인권교육의 대상에서 지자체의 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제외되기 쉬운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 중요하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물론 인권 관련 정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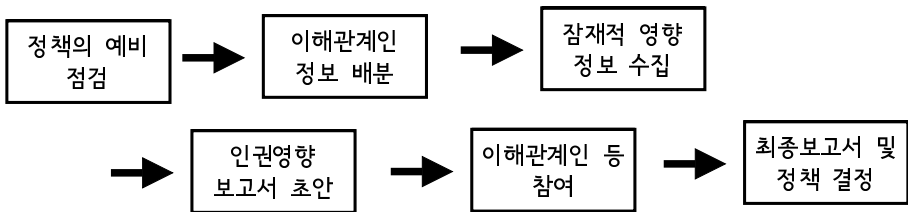
넷째, 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인권침해구제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하고 있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일정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 조례가 정한 기관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동조례 제21조 제1항).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조례 제21조 제2항).

이러한 내용들은 인권기본조례에 필수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그리고 평가하는 기구의 설립이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 옴부즈맨적인 인권위원회 또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사후의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조사나 시정권고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사전에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권적 관점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심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이

상으로 결정권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기왕의 주민참여예산제와 배심제 등이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확충하고 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43)</sup> 각종 영향평가제는 현재의 또는 제안된 행위의 장래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이러한 내용을 인권 부문에 도입하여 시청이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채택하고 시행하기 전에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채택 및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림 3> 인권영향평가 흐름도



인권영향평가제는 여섯 가지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① 제안된 정책이 전반적인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점검 수행; ② 평가계획을 준비하고 정책과 계획을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정보를 배분하는 것; ③ 제안된 정책의 인권에 대한 잠재적 영향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④ 인권으로부터 나오는 국가의 법적 의무와 잠재적 영향을 비교하는 보고서 초안 준비; ⑤ 보고서 초안을 배포하고 선택지 평가에 이해관계인 참여; 그리고 ⑥ 최종 결정.

43) 오동석, “친자본·반인권적 보건의료정책 비판과 대안”, 민주법학 제38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8.12.1, 69-98; 오동석 외,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2011.7.18. 참조. 광주시의 경우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에 대한 근거 그리고 시행과 평가 구조를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 준비 등이다.

인권영향평가제는 인권기본조례 시행 초기에 그 정착을 위해서 각종 갈등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최소한의 객관적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 또한 불법적이거나 심각한 반대를 불러일으킬 사업들을 계획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다. 사업추진 주체에게 상담 기능을 함으로써 최선의 실천을 유도하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

개인에게 습관이란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에서 관행이란 더더욱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다. 조직에서의 문화 또한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인권도시의 선언과 시행이 관 주도로 이루어질 때 필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는 까닭이다. 거버넌스도 여전히 주도권은 관에게 있다. 법적으로 말하면 구속적이지 않고 재량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 관련 기구는 조직적으로는 관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이면서 근거점과 지향점은 민에 두어야 한다. 과거 관변(官邊)단체에 대립하는 민변(民邊)기관이다. 인권 관련 기구는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피드백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지방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추진력이나 영향력 있는 발언권을 얻기 쉽지 않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민주주의적 제도, 더 나아가 직접민주주의적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의 정책 중에는 다른 기초지방정부 또는 광역지방정부와 협동하거나 연대하거나 하는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협동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조례의 입법화 과정에서 상위법으로서의 법률 또는 광역지방정부의 조례에 저촉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법률해석을 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해석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청원 등의 방식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 V. 나 오 며

오늘날 인권기본조례의 제정은 ‘인류의 소중한 약속’인 인권의 실현과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청사항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자칫 조례라는 범형식 때문에 중앙정부의 법령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조례의 제정에 그치는 지방정부의 전시적(展示的) 목적 때문에 명목적인 조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포기하고 법률 또는 국가 차원의 인권 문제로 해소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의 보편성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장의 주요 주체이지만, 다른 한편 인권 침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일이다.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민주적으로 제정하고 얼마나 민주적으로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 다만 그 길이 더디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올바른 답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선뜻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한방주의’ 같은 단기속성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럿이 함께 만나서 토론하는 길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 <부 록>

# 국가인권위원회 권장

## ○○시(도,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이하 “시”라 한다) 시민(도민, 군민, 구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특별시시장·광역시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 이상 5년 범위 내]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 ]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시 보조금 지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인권지수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명 이상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 중 1/3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연○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 ]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 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공포 후 ( )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 설치 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2012-09-10 (공포)2012-09-2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라 함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도시”라 함은 모든 시민의 인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며 행복한 도시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인권시책에 참여한다.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20조 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소요재원
  4.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

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보고서 발간)** 시장은 2년 주기로 서울시민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센터)**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업무지원
2. 인권 관련 실태조사
3.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 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 6. 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 7.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서울시민 인권헌장)**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

**제13조(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위원회에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

**제18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고 한다)을 둔다.

- ② 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개모집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할 경력에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19조(임기 및 직무의 독립성)** ① 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보호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보호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직무)** ① 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③ 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보호관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보호관은 인권 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조사 결과 통지 및 회보)** ① 보호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시장은 상담 신청인이나 위원회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② 제1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김중섭, “지역사회의 인권 발전과 조례 제정: 진주시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007 겨울호, 2007.
-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009 겨울, 2009, 117-195.
- 김중섭, “지방자치 발전과 인권조례 제정 운동: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2011 겨울, 2011, 119-144.
-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영남대, 2012.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 주최,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안) 공청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12.6.4.
- 안진,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성과와 한계: 광주광역시, 전북,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조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 531-568.
- 안진,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1, 705-743.
- 오동석, “학교에서 헌법실천교육의 의의와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2호, 37-51.
- 오동석, 이민법제의 헌법적 평가와 재구조화, IOM이민정책연구원, 2011.
- 오동석 외 3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및 아동청소년 인권법 입법 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청, 2012.
- 오동석, “인권교육법 제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과제(국가인권위원회/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공동 학술 발표회), 국가인권위원회, 2012.12.1., 99-111.

조상균,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조례의 내용과 과제,” 법학논총 제29권 제2호, 2009.

조상균 외 1인(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포괄적 기본인권조례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 2011.11.

조소영,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 부산광역시의 소수자·사회적 약자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2009, 1-26.

2012년 복지정책 조사연구사업  
**수원시 인권 관련 조례 분석 및  
인권기본조례 제정 방안 연구**

발행일 : 2012. 12.  
발행처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768  
전화 : 031) 898-9851~4  
팩스 : 031) 248-1906  
홈페이지 : <http://www.swwelfare.org/>